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

1. 목적

- 재단의 경영활동이 재단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측정하고 이를 예방 또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재단 활동이 인권 친화적으로 수행되도록 기여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2. 인권경영 추진 체계도

구분	지표	주요내용	완료(예정)시기
1단계	인권경영체계 구축	1. 인권경영 추진 시스템 구축 2.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3. 기관 내 각 부서 확산 4. 기관 외 이해당사자 확산	2019년
2단계	기관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실시	1. 기본계획 수립 2. 평가지표 마련 및 교육 3. 인권경영위원회 평가 4. 평가결과 보고 및 공개	2020년
	구제절차의 평가 및 개선	1. 구제절차 검토	
3단계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1. 인권경영 실행 2. 인권경영 전 과정 공개	(2021년)
4단계	구제절차 제공	1. 구제절차 연구와 준비 2. 구제절차 수립 3. 구제절차 시행 4. 구제절차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	(2022년)

3. 인권영향평가 개요

가. 평가절차

- 1) 인권영향평가 기본계획 수립
- 2) 인권경영 교육(인권영향평가 포함)
- 3)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심의 및 확정(1차 인권경영위원회)
- 4) 인권영향평가단 평가

- 5) 인권영향평가결과 심의 및 확정(2차 인권경영위원회)
- 6) 결과보고 및 공개

나. 평가분야 및 항목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10개분야 158개 지표(국가인권위원회 체크리스트)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재단 활동 전반(경영체제, 고용, 노동권, 산업안전 등) 대상 포괄적 분야 평가

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2개분야 28개 지표(자체 발굴·선정)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재단이 추진하는 특정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4. 분야별 인권영향평가 결과

가.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분야	지표	답변내용				
			예	보완필요	아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30	28	2			
2	고용상의 비차별	17	14				3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6	5				11
4	강제 노동의 금지	11	8				3
5	아동노동의 금지	14	10				4
6	산업안전 보장	17	15				2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10	3	1	4		2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10	6				4
9	환경권 보장	18	7	4	1		6
10	소비자인권 보호	15	12				3
합계		158	108	7	5		38

나.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분야	지표	답변내용				
			예	보완필요	아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에너지정보관 운영	16	14		2		
2	e-전환포럼 운영	12	12				
합계		28	26		2		

5. 개선 계획

가.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1) 분야 1 인권경영 체재의 구축

항목	개선 계획	비고
인권존중 정책선언	외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자문 추진('21년)	1-1-3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인권영향평가 시 외부 전문가 참여	1-2-3

2) 분야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항목	개선 계획	비고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의무이행을 위한 간담회 등 개최	7-1-1
	· 협력회사 선정시 인권보호 상황 평가절차 검토	7-1-2
	· 계약 상대자의 모든 업무영역에 인권존중 관련 내용 추가	7-1-3
	· 계약시 인권보호 및 존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 요구	7-1-4
모니터링 실시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 시행 검토	7-2-1

3) 분야 9 환경권 보장

항목	개선 계획	비고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 환경경영체제 수립 검토	9-1-1
	· 환경관련 정보 수집 평가체계 수립 필요	9-1-2
비상계획 수립	· 환경재해 방지 비상계획 수립 필요	9-4-1
	· 현지주민 대피 포함 비상대응 매뉴얼 보완	9-4-3

나.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1) 분야 1 인권경영 체재의 구축

항목	개선 계획	비고
사회적 약자의 이용기회 증진	·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안내배너 설치	1-2-3
	·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영문홈페이지 제공	1-2-5

6. 인권경영위원회 종합 의견

가. 인권경영 관련 외부 전문가 참여 추진

- 1) 인권경영 전반 사항에 대한 자문 추진
- 2) 외부 전문가의 평가결과에 대한 내부이견 검토 필요

나. 인권경영 전담부서 대안으로 위원회 활용

다. 외부평가에 대비한 충분한 근거 확보

7. 후속조치 사항

가. 인권영향평가 환류체계 운영

- 1) 평가결과 및 의견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 인권경영 추진
- 2) 내·외부 이해관계자 인권보호를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추진
- 3) 인권경영 간담회 개최·운영

나. 차기 인권영향평가 추진시 검토사항

- 1) 기관운영 평가 지표 개선 사항 검토
 - 평가 결과 중 해당없음 지표 지속 운영 여부 등
- 2) 외부 전문가 참여 검토
- 3) 인권경영 관련 교육 내용을 사회적 이슈 상황 반영
- 4) 주요사업의 인권보호 매뉴얼 최신화 및 이행 상황 지속 점검

※ 붙임 : 1.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1부. 끝.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10개 분야 : 158개 지표

▶분야 1. 인권경영 체재의 구축

1-1. 인권존중 정책선언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인권존중 정책선언	1	재단은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정책선언을 했다.	√					
	2	인권정책선언은 재단의 최고위 수준에서 표명된 것이다.	√					
	3	재단의 인권정책선언은 재단내부와 외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				
	4	재단의 인권정책선언은 재단에서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이 큰 중요한 인권현안이 무엇이지가 표명되었다.	√					
	5	인권정책선언은 공개적이며,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					
	6	인권정책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	√					
소계			5	1				

1-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1	재단은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					
	2	인권영향평가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인권규범을 준거로 한다.	√					
	3	인권영향평가 실행 시 재단 내·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				
	4	재단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협의를 한다.	√					
	5	자회사나 협력회사의 활동도 인권영향평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					
	6	인권영향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소계			5	1				

1-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1	재단은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					
	2	재단은 인권경영 문제를 다루는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					
	3	재단은 인권준수 감시장치를 마련했다.	√					
	4	재단은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5	자회사나 협력회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견될 경우, 기관차원에서 대응한다.	√					
소계			5					

1-4. 인권경영 성과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인권경영 성과	1	재단은 인권경영 성과를 정량적 지표 또는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확인한다.	√					
	2	인권경영 성과 확인 시 내·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					
	3	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4	인권경영 성과 보고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					
	5	보고는 재단의 활동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					
	6	보고는 시간의 추이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일관적이다.	√					
	7	보고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친다.	√					
소계			7					

1-5. 구제절차 마련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구 제 절 차 마 련	1	재단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절차를 제공한다.	√					
	2	구제절차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등 인권규범에 기반을 두었다.	√					
	3	구제절차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	√					
	4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					
	5	피해자가 회사 구제절차 이외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조력한다.	√					
	6	구제절차는 개별적인 문제해결에 그치지 않고, 그에 합당한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					
소계			6					X

▶분야 2. 고용상의 비차별

2-1. 고용상의 비차별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고 용 상 의 비 차 별	1	재단은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2	재단은 노동자 모집·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					
	3	재단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4	재단은 노동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5	재단은 노동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소계			5					X

2-2. 고용상 남녀비차별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고 용 상 의 남 녀 비 차 별	1	재단은 여성노동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					
	2	재단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제공한다.	√					
	3	재단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여성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4	재단은 노동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					
	5	재단은 노동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여성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6	재단은 여성노동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					
소계			6					X

2-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고용상의 근로자 비차별	1	재단은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이유로 사업장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					
	2	재단은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회사 내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편의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3	재단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					
소계			3					

2-4.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1	재단은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지 않는다.					√	
	2	재단은 외국인 노동자가 자신이 가진 종교적,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한다.					√	
	3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관(기업)(자회사, 지사 등)은 현지문화와 제도를 존중한다.					√	
소계							3	

▶분야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3-1.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결사· 단체 교섭의 자유	1	재단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한다.	√					
	2	재단은 노동조합등을 통해 노동자가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근로조건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3	재단은 노동조합 활동을 포함하는 노동자 모임을 위해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					
자유	4	재단은 정기적으로 노동자의 대표와 단체교섭 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소계			3				1	X

3-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1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2	노동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3	노동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4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노동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5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다.					√	
소계							5	X

3-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1	재단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자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	
	2	재단은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자 대표로서의 활동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3	재단은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해고를 하는 경우에 노동자대표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한다.					√	
	4	재단은 노동자 대표가 단체협상을 요구할 때 의사결정권이 있는 회사대표가 참여하여 협상한다.					√	
	5	재단은 단체교섭을 통해 성립된 단체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소계						5		

3-4. 노동조합 부재시 대안적 조치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노동조합 부재시 대안적 조치	1	재단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재단은 직원들이 독립적으로 노동관련 문제를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조치를 제공한다.	√					
	2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의하도록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					
소계			2					

▶분야 4. 강제 노동의 금지

4-1. 강제노동 금지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강제 노동 금지	1	재단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					
	2	재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계약을 위해 노력하며, 노동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3	재단은 노동자의 행동을 제약할 목적으로 각종 신분증·여행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					
	4	재단은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의무적 초과 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					
	5	재단은 노동자를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강제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					
	6	재단은 노동자에게 부채를 안긴 후 빚을 담보로 한 강제근로를 실시하지 않는다.	√					
	7	노동자는 근무시간 이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작업장을 떠날 수 있다.	√					
	8	노동자는 누구나 합리적인 수준의 사전통지 이후에 회사를 그만둘 수 있다.	√					
소계			8					

4-2. 자회사·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자회사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1	재단은 외국에서 활동하는 자회사나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	
	2	자회사나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을 이용하거나 그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	
	3	인신매매, 채무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지 않으며,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					√	
소계							3	

▶분야 5. 아동노동의 금지

5-1. 연소자 고용 금지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연 소 자 고 용 금 지	1	재단은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2	재단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15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3	재단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4	재단은 교육프로그램을 병자하여 고용이 금지된 연소자를 고용하는 일이 없다.					√	
	5	재단은 서류를 통해 노동자의 나이를 확인한 후 고용하며, 신분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명서의 확실성을 검토한다.	√					
	6	출생증명서가 없는 국가에서 활동하는 경우, 적절하게 나이를 확인하는 대안적 방법을 고려한다.	√					
소계			5				1	

5-2.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연 소 자 고 용 을 알 게 된 경 우 의 조 치	1	연소자를 고용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고용을 중지시키기보다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다른 구제조치를 취한다.					√	
	2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	
	3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4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할 때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는다.	√					
	5	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 고용으로 인하여 의무교육이 중지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6	재단은 아동들의 건강, 안전, 도덕의식에 해로운 작업을 규정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					
	7	재단은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에 18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8	연소자들이 노동에 적합한 체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소계			5				3	

▶분야 6. 산업안전 보장

6-1. 작업장 안전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작업장 안전	1	재단은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한다.	√					
	2	재단의 비상탈출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지 않으며, 항시 이용가능 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					
	3	재단 내의 환기와 실내온도, 조명, 음용수, 세면대, 의자, 작업복, 음식보관시설, 숙소,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					
	4	재단은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되도록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					
	5	재단은 유해물질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한다.	√					
소계			5					

6-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1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					
	2	재단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18세 미만자를 도덕상·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근로시키지 않는다.	√					
	3	임신을 한 노동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4	장애인들이 회사 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					
소계			3				1	

6-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1	재단은 노동자들이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장비를 제공하며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2	노동자가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위험성에 관한 정보가 노동자에게 제공되고, 노동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					
	3	작업장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관련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					
	4	재단은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은 법이 정하는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한다.					√	
	5	재단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소계			4				1	

6-4.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지원	1	재단은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요양비 등을 지원한다.	√					
	2	요양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한다.	√					
	3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운영한다.	√					
소계			3					

▶분야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7-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1	재단은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이행을 요구한다.			√			
	2	재단은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력회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			
	3	재단은 모든 계약에 공급업자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				
	4	재단은 협력회사와 계약 시 인권보호·준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			
소계				1	3			

7-2. 모니터링 실시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모니터링 실시	1	재단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			
	2	재단은 모니터링 결과 협력회사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계의 단절을 고려한다.	√					
소계			1		1			

7-3.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보안담당 직원 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1	재단은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					
	2	재단의 보안담당 직원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					
	3	재단이 보안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인권보호 준칙의 준수를 요구한다.					√	
	4	재단이 보안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인권보호 준칙이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	
소계			2				2	

▶분야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8-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 보호	1	재단은 토지 소유주를 비롯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 협의한다.	√					
	2	관련 법령에서 재단활동과 관련하여 지역민과의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준수한다.					√	
	3	재단은 토지구매 시 법률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며, 지역주민의 법과 관습에 따른 권리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					
	4	재단은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수단을 이용하지 않는다.	√					
	5	재단은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해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당사자나 제3자들과 협의를 한다.					√	
	6	재단은 부적절한 강제이주에 가담하거나 이주를 해야하는 주민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기지 않으며, 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	
	7	법률에서 이주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고 법률 취지에 맞는 대책을 수립, 제공한다.					√	
소계			3				4	

8-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1	재단은 타인의 지식을 이용할 때 그것이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닌지 사전에 조사한다.	√					
	2	재단은 저작권이나 지적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때는 관습적으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인지를 검토한다.	√					
	3	모든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와 협상할 때는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					
소계			3					

▶분야 9. 환경권 보장

9-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1	재단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다.		√				
	2	재단은 환경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한다.		√				
	3	환경개선을 위한 측정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목표가 적절한지를 점검한다.	√					
	4	재단은 회사 활동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에서 환경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5	재단은 환경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노동자를 교육하고 훈련한다.	√					
소계			3	2				

9-2. 환경정보의 공개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환경정보의 공개	1	재단은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일반 대중과 노동자에게 제공한다.	√					
	2	환경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환경사고가 났거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가급적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한다.					√	
	3	환경정책을 개발할 때, 노동자, 고객, 공급자, 지역사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과 협의한다.					√	
소계			1				2	

9-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1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한다.	√					
	2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업의 확장을 고려하는 경우,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3	환경영향평가 결과 심각한 환경영향의 가능성이 발견되면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4	환경훼손에 대한 과학적 입증은 없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환경훼손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	
	5	대규모 환경오염피해를 대비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	
소계			1				4	

9-4. 비상계획 수립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비상계획 수립	1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한다.		√				
	2	재단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진 비상사태 대응지침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3	재단은 비상사태 대응계획을 해당 지역 및 당국과 함께 개발했으며, 현지주민도 대피를 포함하여 비상시 대응방법을 알고 있다.		√				
	4	재단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지역사회, 관련 당국, 외부 비상사태 용역회사에게 즉시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					
	5	재단과 병원간의 거리가 먼 경우 응급조치를 위한 시설과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다.			√			인근병원 활용
소계			2	2	1			

▶분야 10. 소비자인권 보호

10-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1	재단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 제조, 표시를 함에 있어서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	
	2	재단은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제조, 설계 또는 표시 등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평가를 실시한다.					√	
	3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가격정보, 성분, 사용법, 보관법 등에 관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	
	4	재단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는다.	√					
	5	재단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거래조건, 제품특성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6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며, 지역에 따라 현지어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	√					
소계			3				3	

10-2. 제품 결함 시 조치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제품결함시 조치	1	재단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상품을 조속히 회수(리콜)한다.					√	
	2	제품이 시장으로 출하된 이후 제품의 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린다.					√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손실을 당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한다.					√	
소계							3	

10-3. 소비자 사생활 보호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소비자 사생활 보호	1	재단은 소비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재단이 수집, 저장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2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었으며, 공개되어있다.	√					
	3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					
	4	소비자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	√					
	5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가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6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					
소계			6					X

②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2개분야 : 28개지표

▶분야 1. 에너지정보관 운영

1-1. 노동환경 보장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노동환경 보장	1	노동자는 법정 근무시간, 휴식시간을 보장 받고 있다.	√					
	2	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					
	3	이용객 또는 방문객으로부터 위협 또는 그 밖의 가혹한 괴롭힘을 받지 않도록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있다.	√					
소계			3					

1-2. 사회적 약자의 이용기회 증진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의 이용기회 증진	1	정보약자를 배려한 예약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					
	2	교통약자의 시설물 이용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있다.	√					
	3	장애등급제 폐지('19.7.1)에 따른 안내 및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			
	4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					
	5	외국인 이용자를 위하여 다국어로 된 안내가 제공되고 있다.			√			
소계			3		2			

1-3. 개인정보(인권) 침해 예방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개인정보 침해 예방	1	예약 및 운영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는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다.	√					
	2	시설내에 설치되어있는 CCTV는 잘 보이는 곳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다.	√					
	3	부적절한 고객응대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4	인근 지역 주민의 사적침해를 최소화 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소계			4					X

1-4. 비상대응계획 수립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비상대응계획 수립	1	노동자, 관람객의 안전과 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했다.	√					
	2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3	재단은 비상상황 발생의 경우 즉시 연락가능한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었다.	√					
	4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관련 보험에 가입하였다.	√					
소계			4					X

▶분야 2. e-전환포럼 운영

2-1. 포럼 참여자의 인권 보호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참여자 의 인권 보호	1	포럼 운영 과정에서 수집한 참여자의 개인 정보 관리방안이 수립되어 있다.	√					
	2	행사장 등은 불법촬영 등으로부터 안전하다.	√					
	3	포럼 참여자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					
	4	포럼 참여자의 종교, 인종,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고 있다.	√					
소계			4					

2-2. 행사장 안전 보장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행사장 안전 보장	1	재단은 모든 설비/시설 운영으로 인한 안전 위험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지한다.	√					
	2	포럼 운영 시에 행사장소의 응급상황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					
	3	전염병 등에 대한 방역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					
	4	행사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을 위해 관련 보험에 가입(또는 확인)하고 있다.	√					
소계			4					

2-3. 사회적 약자의 참여기회 증진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의 참여 기회 증진	1	정보약자를 배려한 참여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					
	2	교통약자의 시설물 이용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있다.	√					
	3	장애등급제 폐지('19.7.1)에 따른 안내 및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					
	4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					
소계			4					